

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6. 29. (송선영 의원 등 12명)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6. 30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
(2023. 7. 13. 원안가결)

2. 제안요지설명 (송선영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1) 화성시 취약계층 가구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등록 수수료 및 의료비 등의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하고,
- 2)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심신건강과 정서함양을 도모하고, 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유도

나. 주요내용

- 1) 취약계층 및 반려동물의 정의(안 제2조)
- 2) 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 등 지원의 종류(안 제4조)
- 3) 지정동물병원 등(안 제5조).
- 4)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(안 부칙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이교열 전문위원)

가. 본 안건은 화성시 취약계층 가구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등록 수수료 및 의료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심신건강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

나.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및 반려동물의 정의, 돌봄서비스 이용료 지원 등 지원의 종류, 지정동물병원,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음.

다. 본 조례 제정으로 지원대상을 수급자·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까지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6. 29. (화성시장)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6. 30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
(2023. 7. 13. 원안가결)

2. 제안요지설명 (백영미 경제정책과장)

가. 제안사유

- 1) 경기도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, 2023년 10월중 준공 예정인 병점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실시를 통한 병점지역 상인 및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도모.

나. 주요내용

- 1)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부대시설의 관리
- 2) 병점지역 상인, 이용고객 및 주민의 복리증진
 - 가) 병점중심상가 인근 상권의 시책 발굴 및 수행
 - 나) 인근지역 상인 및 주민을 위한 기능·취미·교양강좌의 운영
 - 다) 각종 편익시설의 이용 개방
 - 라) 상인교육 운영
- 3) 고객지원센터 시설물·비품 관리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이교열 전문위원)

가. 본 안건은 경기도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3년 10월 준공예정인 병점 중심상가 고객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,

나.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부대시설 관리, 병점지역 상인과 이용고객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음.

다. 향후 고객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시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6. 29. (화성시장)

나. 회 부 일 자 : 2023. 6. 30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
(2023. 7. 13. 원안가결)

2. 제안요지설명 (신현배 기업지원과장)

가. 제안사유

- 1) 화성시 내 중소·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 창업기업의 신설이 증가하면서,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고자 함.
- 2) 조례 일부를 신설·정비하여 중소기업지원 자문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창구 기능하도록 하고자 함.
- 3) 법체계상 본 조례에 하위법규인 규칙을 인용한 부적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세무조사 면제 규정의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정책자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“중소기업지원 자문단”을 설치하고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(안 4조의2, 제4조의3, 제4조의4, 제4조의5, 제4조의6, 제4조의7, 제4조의8)
- 2) 3년간의 세무조사 면제규정 개정(안 제7조 제3항 제3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이교열 전문위원)

가. 본 안건은 중소·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 창업기업의 신설이 증가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 자문단의 운영 근거와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,

나.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,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자문단이 기업정책 마련을 위한 창구역할을 담당하고, 관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